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

1. 상호(명칭): (주)제일벽지

2. 성명(대표자): (주)제일벽지 (생년월일: 1916년 15월 11일)

3. 주소(사업장소재지):

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대길 38-24

(전화번호: 07040203038)

4.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

가.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: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석유류저장시설설

나.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장용량: 저장시설: 총 2 기 총용량: 66,000.00 &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 :

5.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내역

가. 방지시설의 종류 : 철콘,밸브없는 통기관,에어다이아프램 펌프

나. 설치내용: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

6.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

[□] 해당 [□] 해당하지 않음 [■] 확인을 신청하지 않음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(변경)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12년 3월 2일

경기도 안성사장들

<변경 사항>

일	자	내 용	확	인

<참고사항>

일] 자	내 용	확	인

<저장시설>

시설명	오염물질	용량(단위)	수량(기)	완공일	시설형태
석유류저장시설	제4석유류	42,000.00 l	1	2012/02/29	옥외탱크저장소
석유류저장시설	제4석유류	24,000.00 ℓ	1	2012/02/29	옥외탱크저장소

<행정처분사항>

일	자	내 용	확	인